

	<b>안전보건경영 지침서</b>	문서번호	HW-SHI-825
	<b>작업중지권 사용에 관한 사항</b>	개정일자	2022.11.11
		개정번호	0
		쪽 번호	1 / 2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계 법령

--	--	--

0	2022.11.11	최초 제정
---	------------	-------

<b>개정번호</b>	<b>개정일자</b>	<b>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b>
-------------	-------------	----------------------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부서명 / 직책	안전환경관리부 주 임	안전환경관리부 부 장	대 표 이 사
성 명	공 도 현	김 병 후	이 수 대
서 명			
일자(년/월/일)	2022/11/11	2022/11/11	2022/11/11

	<b>안전보건경영 지침서</b>	문서번호	HW-SHI-825
	<b>작업중지권 사용에 관한 사항</b>	개정일자	2022.11.11
		개정번호	0
		쪽 번호	2 / 2

1.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당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있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지침서는 당사 전 근로자의 사고, 사건과 산업재해로 발생 되는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근로자

사내에 근무하는 사업장 소속의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3.2 작업 중지권 사용

근로자가 급박한 상황에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함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보장한다

4.2 안전환경관리부(본사)

작업 중지권 사용을 보장하고 작업 중지권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4.2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4.2.1 작업 중지권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4.2.2 작업중지 내용을 근로자로부터 전파 받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환경관리부로 내용을 보고한다.

5. 업무 절차

5.3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5.4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5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6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6. 관계 법령

6.1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